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18일, 권영진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12.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9.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권영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관리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주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개정안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공공행정 목적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규모의 공간정보가 생산·관리·활용·유통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주체별로 공간정보 활용체계가 중복 구축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거나 자료가 불일치하는 등 혼선 또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정의하고,

관리기관이 구축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국가공간정보체계’로 정의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유기적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활용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 개편 결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축을 이루는 관리기관의 범위에 변동이 발생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21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것은 연구기

관이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력과 예산 등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다만, 종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위를 부여받고 공간정보 협력·공동활용 체계에 속해 있던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기존과 같은 공간정보 생산·관리·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게 됨.

2024년을 기준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및 관리, 건설시추정보 전산화, 측량기기 성능검사,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및 연구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기능을 해 온 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 발전, 지하안전 확보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해 해당 기관에서 구축·관리되어 온 공간정보가 제도적 기반에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함과 아울러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및 국민의 안전

확보 등의 측면에서도 타당한 취지의 입법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및 연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공간정보 생산·관리 기능 및 다른 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원활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범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권영진의원, 엄태영의원, 김도읍의원 및 송기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